

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

중개보수의 요율 및 한도

1. 주택(부속토지 포함)의 중개보수(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, 별표1)

구분	거래금액	상한요율	한도액	비고
매매·교환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6	250,000원	※ 부가가치세는 별도임
	5천만원 이상 ~ 2억원 미만	1천분의 5	800,000원	
	2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
	6억원 이상 ~ 9억원 미만	1천분의 5	-	
	9억원 이상	1천분의 9이내에서 협의	-	
임대차 등	5천만원 미만	1천분의 5	200,000원	
	5천만원 이상 ~ 1억원 미만	1천분의 4	300,000원	
	1억원 이상 ~ 3억원 미만	1천분의 3	-	
	3억원 이상 ~ 6억원 미만	1천분의 4	-	
	6억원 이상	1천분의 8이내에서 협의	-	

-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상한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,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다
- 거래금액의 계산 및 적용은 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」 제20조에 따른다

2. 오피스텔의 중개보수(시행규칙 제20조) 전용면적85㎡이하 일정설비(부엌, 욕실 등)를 갖춘 오피스텔

구분	상한요율	적용시기	비고
매매·교환	1천분의 5	'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	※ 부가가치세는 별도임
임대차 등	1천분의 4		

3. 그 외(토지, 상가)의 중개보수(시행규칙 제20조)

-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

구분	보수요율	비고
매매·교환·임대차 등	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	

위 1,2,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

- 1)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 × 100)
- 2) 1)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(재계산) 거래금액 = 보증금 + (월차임 × 70)

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: (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(융자포함) + 프리미엄) × 요율

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(경기도 조례 제3조)

- 1) 제증명 신청 및 공부 열람대행 : 1건당 1,000원
- 2)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: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
- 3) 여비 등(교통비, 숙박료) : 실비

기타

- 1) 상가 + 주택의 경우 ⇒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,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
- 2)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·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
- 3) 주택임대차 계약서 작성 ⇒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

